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2022년　11월　18일

대표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조경구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윤권근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2. 11. 18.
발 의 의 원 : 이영애, 이태손 조경구, 윤권근 김정옥, 황순자 정일균, 전경원 김원규, 이재화 김태우 의원(11명)

1. 제정 이유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국제 분업이 붕괴됨에 따라 한국의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일본 수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자립화를 위하여 대구시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소재·부품·정비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소재·부품·정비산업의 육성 지원, 실태조사(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기업 지원 등, 지원사업의 평가(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마. 입지지원 등, 업무의 위탁, 포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상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
4.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부품・장비 관련 세미나・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유치,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
9.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
2.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시에 소재하는 기업
2. 시에서 창업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기업
3. 법 제17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평가)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입지지원 등)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 · 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 · 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 ·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 · 부품 · 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 · 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 ·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7. “신뢰성”이란 소재 · 부품 · 장비의 품질 · 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8. “실증기반”이란 소재 · 부품 · 장비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 설비 기반을 말한다.
9. “협력모델”이란 소재 · 부품 · 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 · 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10. “상생모델”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 · 부품 · 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